

모방대상 이미지에 제3자의 권리침해 하자 있는 경우에도 보호대상, 무단복제, 모방은
불법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제3자의 권리침해와 별개의 문제: 대법원 2020. 2. 13. 선
고 2015다225967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 피고는 모두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
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
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

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횡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며 소 제기, 원고가 자신의 성과물인 위 이미지를 피고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1. 쟁점

- 원고의 이미지는 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것,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이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 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